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0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8년 10월 17일
- 회 부 일 : 2018년 10월 29일

###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2018. 1. 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전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권한, 직무 및 업무처리 절차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납세자보호관 등의 배치 및 자격요건, 임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2018. 8. 2. ~ 8. 22.)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sup>1)</sup>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li> </ul>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부서”란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부과·징수가 위임된 시세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함.</li> <li>- “세무부서장”이란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을 말함.</li> <li>-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납세자보호담당자”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함.</li> <li>-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란 완료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어 처분 또는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함.</li> <li>-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시세 부과·징수 등 시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과 납세자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함.</li> <li>- “일시중지 요구”란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함.</li> <li>- “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함.</li> <li>- “시정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를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함.</li> </ul>
제3조 (납세자보호관 등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보호관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둠.</li> </ul>
제4조 (납세자보호관 등의 자격요건 및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li> <li>-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li> </ul>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와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li> <li>-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li> <li>-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li> <li>-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li> </ul>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li> <li>-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li> </ul>

<p>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li> <li>-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li> <li>- 세무부서장 및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문·조사</li> </ul>
<p>제7조 (고충민원의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li> <li>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li> <li>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li> <li>4. 수사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li> <li>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li> <li>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li> <li>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li> </ol> </li> </ul>
<p>제8조 (권리보호요청의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영 및 그 밖에 지방세 관계법령(이하 “지방세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li> <li>2. 시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li> <li>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li> <li>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li> </ol> </li> <li>- 시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시세 집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명자료의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정의 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li> <li>2.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li> <li>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li> <li>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li> </ol> </li> </ul>

	<p>사용하는 행위</p> <p>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p>
제9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p>- 세무부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p> <p>1.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통지</p> <p>2.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통지</p> <p>-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통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일시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함.</p> <p>-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와 세무부서장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p> <p>- 세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p>
제10조 (세무조사 연기)	<p>- 세무부서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p> <p>-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통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검토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함.</p> <p>-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와 세무부서장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p> <p>- 세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p>
제11조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	<p>- 서울특별시 납세자권리현장을 제 개정하는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함.</p> <p>- 납세자보호관은 시 소속 세무부서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p>
제12조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p>-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함.</p> <p>-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p>
제13조(준용)	<p>-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및 제19조를 준용</p>
제14조(시행규칙)	<p>-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p>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6년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심부족, 독립성 미흡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으로(2017년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83개, 실제 배치 2곳, 운영실적 0),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2018년1월1일)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음.

**<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

- ◇ (개념)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 (개선내용) 납세자보호관 배치 의무화, '직무와 권한을 시행령에 명시, 개방형 직위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77②, 동법 시행령§51조의2) ※'18.1.1 시행

구분	내 용	근거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자치단체에 배치,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li> </ul>	법, 조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li> <li>•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li> <li>•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li> </ul>	시행령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li> <li>•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li> <li>• 위법·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li> </ul>	시행령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시·군·구별 1명</li> <li>-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음</li> </ul>	조례
선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급기준) 6급(시도는 5급 또는 4급)</li> <li>• (경력기준) 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li> <li>• (민간채용) 세무사 등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li> </ul>	조례

- ◇ (기능)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행정안전부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면서 시·도의 경우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담당관실에 배치를 권고하였으며,
- 2018년 3월, 기획조정실에서 “시민권리보호 측면에서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납세자보호관의 소관부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지정한바 있음.

### 「납세자보호관제도」 소관부서 지정계획

#### □ 검토 배경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867호('17.12.18)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제정(기본안) 수정 송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98호('18. 1.10)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운영 추진계획 통보

#### 〈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

- 법률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토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지방세기본법§77, 영§51조의2)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안건 심의, 고충민원 분류 등의 사항을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 필요
  - 행안부 지침상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 권리구제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권고
  - ※ 시·도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담당관실 등, 시군구는 법무담당관, 기획예산실 등
  - 선발은 소속직원 중 직급·경력\* 등 일정요건 구비한 자로 하되, 필요시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
  - \*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 6급(시·도는 5급 또는 4급)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처리절차, 통보방법(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검토결과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이하 위원회)**

- 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시민권리보호 측면에서 목적과 취지가 일치함**
  -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임
  -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목적은 과세처분 등에 관한 **기존 법적 구제절차 외의 수단과 권한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
- **고충민원 조사·조정 과정에서 시정·권고하는 등 직접적 권리구제 권한 보유**
  - 위원회는 **시정일반 고충민원 전담기관**으로 처분성, 심각성, 집단성, 반복성이 명확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직접조사를 통해 **시민권익 보호**

[ 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 직무 및 권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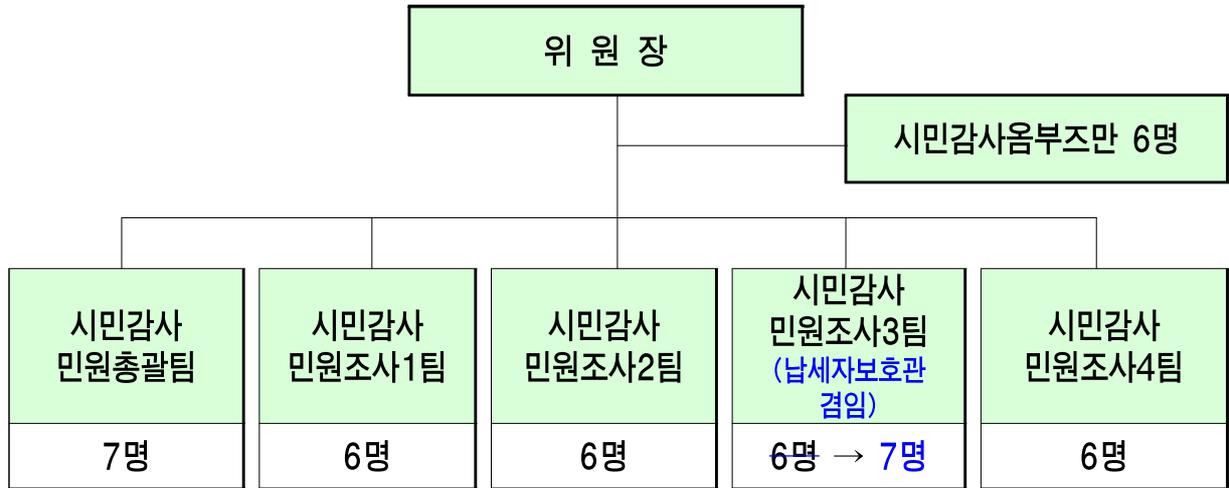
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납세자보호관
직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li> <li>▸ 주민(시민)감사 청구, 市의회 의회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처리</li> <li>▸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li> <li>▸ 시민생활 불편민원 조정·처리 및 지도 감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현장의 준수·이행 여부 심사</li> <li>▸ 세무조사 연기, 기한의 연장·징수유예 처리 등 그 밖의 사항</li> </ul>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부서 시정·집행정지 요구</li> <li>▸ 미 시정 사안 상급기관 보고</li> </ul>

- 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세무부서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납세자보호업무 수행 가능**

**운영방안 : 일반직 납세자보호관(총2명) 지정**

- **민원조사3팀에 일반직 납세자보호관 배치(행정5급 1, 세무6급 1)**
  - 민원조사3팀은 **재무국 고충민원 조사·처리 담당하여 직무 연계**
    - 팀 업무분장 : 공공사업 감시·평가 운영 총괄,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총괄, **재무국 등 고충민원사항 조사·처리**, 주민·시민 참여 감사 등
  - 상시적 업무수행을 위해 **일반직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하되, 시정요구, 일시중지 요구 등을 위원회 의결로써 추진하여 **독립성·객관성 확보**
  - **민원조사3팀장(행정5급)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되, 지방세 업무 경력을 갖춘 **납세자보호 전담인력(세무6급) 증원**

[ 납세자보호관 배치(안) ]



▶ 세무6급 + 1명

행정사항

-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사전준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방침수립 후 즉시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조직담당관) : '18. 3 ~ 4월
-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8. 하반기
-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조직담당관) : '18. 하반기

- 증원 : 세무6급 + 1명

※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현원 배치(인사과 협조)

- 타 시·도(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배치 완료)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모두 법무담당관에 배치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배치하고 있는바,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인 권한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안에서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7개 시·도 납세자보호관 조례제정 및 인력배치 현황」

(2018. 10. 31. 현재)

연번	시·도명	제정일자	운영 부서	납세자보호관		비고
				직급	배치일자	
1	서울특별시	-				
2	경기도	'18.3.20.	법무담당관	임기제 가급	'18.5.29	
3	강원도	'18.5. 4.	교육법무과	행정5급	'18.9.28	
4	충청남도	'18.7.30.	-	-		
5	충청북도	'18.4. 6.	-	-		
6	전라남도	'18.3.29.	법무통계담당관실	행정5급	'18.3.31	
7	전라북도	'18.4.20.	-	-		
8	경상남도	'18.3.29.	법무담당관	행정5급	'18.9.1	
9	경상북도	'18.4.19.	법무담당관실	행정5급	'18.4.9	
10	제주도	'18.7.13.	특별자치법무과	행정6급	'18.8.28	변호사
11	인천광역시	'18.4.20.	법무담당관실	행정5급	'18.4.16	
12	세종시	'18.2.12.	-	-		
13	대전광역시	'18.4.20.	-	-		
14	대구광역시	'18.4.10.	법무담당관	행정5급	'18.4.10	
15	울산광역시	'18.4.12.	법무담당관	행정5급	'18.7.1	
16	광주광역시	'18.4. 1.	법무담당관실	행정5급	'18.4.1	
17	부산광역시	'18.5.16.	법무담당관	세무6급	'18.9.1	

- 특히, 동 제도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바, 지방자치단체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필요 인력 지원(기준인건비 조정) 등 행정안전부의 내실있는 지원 촉구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조례 제정과 동시에 추진되었어야 할 「서울특별시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조례의 목적, 정의, 배치 등(안 제1조~제4조)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및 납세자보호관 배치(안 제3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준안	서울시 조례안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u>현저히 예상</u> 되는 경우 <u>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u>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시세 부과·징수 등 시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u>예상</u> 되는 경우 <u>납세자(법 제139조2)에 따른 납세관리인과 납세자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u>

- 2)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안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인바, 표준안과 같이 권리보호요청 대상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4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2제3항(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제1항 제2호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다소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 표준 조례안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자격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표준 조례안과 같이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경력 요건을 구체화 하는 방안에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표준안	서울시 조례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 등의 자격요건 및 임명)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 <sup>4</sup>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p>1. 직급기준: 5급 또는 4급</p> <p>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b>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b>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sup>3)</sup>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2. <b>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b></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sup>5)</sup>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p> <p>③ <b>납세자보호담당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보한다.</b></p>
--	--

- 3)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4)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2)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납세자 보호관의 직무로는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와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④ 삭제 <1996. 3. 23.>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⑥ 삭제 <2009. 9. 21.>

⑦ 삭제 <2009. 9. 21.>

⑧ 삭제 <2009. 9. 21.>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표준안과 달리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계획에 따라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표준안	서울시 조례안
<p>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li> <li>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li> <li>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li> <li>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li> </ol>	<p>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직무)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와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li> <li>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li> <li>3.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li> <li>4.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li> <li><b>5.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b></li> </ol>

- 6)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정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만의 권한과 직무에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와 직권에 의한 감사”가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7)에 따르면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사항인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의결 사항인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7) 제1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에서 의결한다.

1. 감사 및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안
<p>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p> <p>②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감사·조사 활동에서 독립된 조사관의 지위를 갖는다.</p> <p>③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p> <p><b>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b></p> <p>2.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p> <p><b>3. 직권에 의한 감사</b></p> <p>4. 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처리</p> <p>5.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p>	<p>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직무)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와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p> <p>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p> <p>3.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p> <p>4.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p> <p><b>5.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b></p>

- 안 제6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세무부서장 및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문·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표준안과 다른 점은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사항은 삭제하고, 질문·조사 대상을 “세무부서장 및 소속 세무공무원” 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무와 권한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준안	서울시 조례안
<p>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p> <p>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p> <p>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p>	<p>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p> <p>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p> <p>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p>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u>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u>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u>질문·조사</u>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5. <u>세무부사장 및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문·조사</u>
---	---

### 3)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안 제7조~제8조)

- 안 제7조는 ‘고충민원 대상’을, 안 제8조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표준안과 다른 부분은 제7호의 규정으로, 제정안에는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표준안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준안	서울시 조례안
<p><b>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b>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p> <p><b>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li> <li>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li> <li>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li> <li>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li> </ol>	<p><b>제7조(고충민원의 대상)</b> ① 고충민원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세와 관련된 민원으로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li> <li>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li> <li>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li> <li>4. 수사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li> <li>5. 법 제108조8)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9)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li> </ol>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예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 결정 등은 고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보호요청의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 영 및 그 밖에 지방세 관계법령(이하 "지방세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시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시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시세 집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p>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li> <li>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li> <li>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li> <li>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li> <li>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li> </ol>	<p>행위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명자료의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정의 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li> <li>2.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li> <li>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li> <li>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li> <li>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li> </ol>
---	--

- 8)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9)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정(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안 제9조~제10조)

-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세무조사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표준안에는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 세무부서장이 납세보호관에게 조사 종료 3일전까지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세보호관이 승인, 불승인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정안에는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민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준안과 같이 납세자보호관이 모든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시기 연기 등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바, 합의제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마다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목적과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살펴볼 때,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5급(상당)으로 운영하려는바, 세무부서장(4급)에게 세무조사 연장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형식적인 의견과 검토로 이어져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물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게 될 경우, 조직 구조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결재로 승인 여부가 통보되므로 이러한 구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납세자보호관을 기존 조직내에 배치하게 될 때, 직접적인 결재자와 의견 통보자는 부서장이 되는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는 부서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등의 제도의 변질이 있을 수 있음.

표준안	서울시 조례안
<p>제2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b>세무부서장이</b>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b>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b>하여야 한다.</p> <p>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23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p> <p><b>제22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li> <li>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li> </ol> <p>제24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3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p>	<p>제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① <b>세무부서장은 납세자에게</b>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b>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b>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4조10)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통지</li> <li>2.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통지</li> </ol> <p>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통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일시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b>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와 세무부서장에게 처리결과를 통지</b>하여야 한다.</p> <p>④ 세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b>납세자보호관의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b>하여야 한다.</p> <p>제10조(세무조사 연기) ① 세무부서장은 법 제83조제2항<sup>11)</sup>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p>

<p>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p> <p>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p> <p>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조사 연기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통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검토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와 세무부서장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세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p>
--	---

- 10)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 11)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

5)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제1항은 세무부서의 장이 납세자 권리헌장(참고자료 2 참조)을 제·개정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제2항은 “납세자보호관이 시 소속 세무부서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실태 점검과 헌장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준안에는 동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납세자보호관에게 동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도한 권한 행사는 아닌지 여부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세부절차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준안	서울시 조례안
<p><b>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b>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p> <p>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p> <p><b>제31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b>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1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b> ① 서울특별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개정하는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p> <p>② <u>납세자보호관은 시 소속 세무부서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준용 규정 등(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중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준용(제4조, 제11조 및 제19조)하도록 규정한 것임.
- 준용 규정은 “위원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의결사항, 직권에 의한 감사” 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이 아닌바 동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②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감사·조사 활동에서 독립된 조사관의 지위를 갖는다.

③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2.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3. 직권에 의한 감사
  4. 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5.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 서울특별시 감사부서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p>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p> <p>6.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가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p> <p><b>제1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①</b>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에서 의결한다.</p> <p>1. 감사 및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p> <p>2.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p> <p>3. 징계 및 문책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p> <p>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p> <p><b>5.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b></p> <p><b>6. 재심의를 관한 사항</b></p> <p>7.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p> <p>8.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9.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p> <p>10.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p> <p><b>②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b></p> <p><b>제19조(직권에 의한 감사) ①</b>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b>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b></p> <p><b>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b></p>
--

- 종합적으로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납세자의 권리(권리보호요청, 세무 고충 민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바, 세무 조사 연기, 중지 등은 책임성 있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표준안과 달리 처리기한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보호관을 ‘독임제’ 조직이 아니라 ‘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함으로써 처리기한을 규정하여도 미준수 가능성 때문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독임제로 운영시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위원회 조직에 둘 경우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책임의 불명확성, 신속한 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는바, 동 납세자보호관을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처리기한 등의 명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준안**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3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3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

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보호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업무 및 권한의 중첩성, 위원회 의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납세자보호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 분야 옴부즈만을 충원하는 방식 등의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사지원팀장 : 박희숙

입법조사관 : 신정희

## 참고 자료 1

# 00특 · 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000과에 둔다.

※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업무만으로 구성된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에 둘 수 있음.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5급 또는 4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음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시세(부과·징수가 위임된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구·군의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지도·감독)**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9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000금액 이상인 안건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금액을 정함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 제4장 고충민원

**제11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

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구·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구·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3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3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

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5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7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8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

항을 분장한다.

**제31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2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자료 2

# 서울특별시납세자권리헌장

서울특별시세의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서울특별시세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 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무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서울특별시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